교수업적평가 규정

제정일: 2002. 9. 1

개정일: 2018. 4.20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교원의 교수업적평가(이하 '평가'라 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대상) 본교에 재직 중인 모든 교원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교육전임교원은 교육전임교원 업적평가 시행내규에 의하여 평가한다.<단서신설 2006. 6. 1><개정 2007. 12. 20, 2009. 2. 3>
- **제3조(평가종류)** 평가에는 정기평가, 승진임용평가, 재임용평가, 승급평가의 네 종류가 있다.<개정 2009. 2. 3>
 - 1. 정기평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 2. 승진임용평가 : 교원의 승진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
 - 3. 재임용평가: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을 재임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
 - 4. 승급평가 : 정년보장교수의 승급심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

제 2 장 평가방법

- 제4**조(평가분야)** ① 평가는 교육, 연구, 봉사 및 산학협력 분야로 구분한다.<개정 2011. 11. 9>
 - 1. 교육은 강의, 실습, 대학원생지도 및 제반 교육활동을 말한다.<신설 2011.11.9>
 - 2. 연구는 논문, 저서, 수상 및 제반 연구활동을 말한다.<신설 2011.11.9>
 - 3. 봉사는 교내봉사와 교외봉사를 말한다.<신설 2011.11.9>
 - 4. 산학협력은 대내외적인 산학협력 관련 교육, 연구, 봉사 및 기타 활동을 말한다.<신설 2011.11.9>
 - ② 일반 교원의 평가는 교육, 연구, 봉사로 평가하고, 산학협력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학협력 분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1.11.9.> <개정 2016. 8. 11>
- 제5조(평가항목) 평가분야별 항목과 배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12. 7, 2011. 11. 9, 2015. 2. 27, 2016. 1. 8, 2016. 4. 20, 2016. 8. 11, 2018. 4. 20>
- 제6조(심사기준) <삭제 2006. 6. 1>
- 제7조(평가기구) ① 평가를 위하여 각 대학, 대학원 또는 인제니움학부대학, 광운한림원 등 교수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교수업적평가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 2. 3, 2010. 12. 7, 2016. 1. 8>
 - ②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하여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9. 2. 3, 2010. 12. 7>

제 3 장 평가절차

- **제8조(기준월)** 각 평가의 기준월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 2. 3>
 - 1. 정기평가 : 4월
 - 2. 승진임용평가 : 1월 또는 7월

- 3. 재임용평가 : 11월 또는 5월
- 4. 승급평가 : 1월 또는 7월
- 제9조(평가신청) ① 평가대상자는 교수업적평가보고서(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기준월 10일까지 소속학과(부)장, 교학부장 또는 광운한림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9. 2. 3, 2010. 12. 7>
 - ② 승진임용평가와 재임용평가의 대상자는 제1항의 서류와 함께 소정의 임용신청서를 제출한다.
 - ③ 승진임용평가나 재임용평가를 받은 교원에게는 그 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평가를 면제 하고 임용평가의 결과를 정기평가의 결과로 갈음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를 받을 수 있다.
- 제10조(평가절차) ① 학과(부)장, 교학부장 또는 광운한림원장은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교수업적평가 보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여 기준월 20일까지 소속기관의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 다.<개정 2009. 2. 3, 2010. 12. 7>
 - ②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교수업적평가보고서의 실질적 내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준 월 말일까지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가 제출한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기준월 다음 달의 10일까지 총장에게 보고한다.
 - ④ 교무처는 최종 확정된 결과를 기준월 다음 달의 말일까지 개인별로 통보한다.<개정 2004. 3. 1>

제 4 장 이의신청

- 제11조(이의신청) 교수업적평가의 결과를 통보 받은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여 2차까지 재심을 받을 수 있다.
 - 1. 이의가 있는 교원은 통보 받은 날 그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무처에 이의신청 하다
 - 2.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개정 2004. 3. 1, 2006. 6. 1, 2009. 2. 3>
 - 3.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에 결과를 통보 받은 날 그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6. 6. 1>
 - 4. 「교원인사위원회」는 외부의 교수 3인을 선정하여 재재심을 의뢰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6. 6. 1>

제 5 장 보 칙

제12조(비밀유지) 평가에 관여한 교직원은 그 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된다.

제13조(준용)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규정의 폐지) 본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시행한 "교수업적평가제도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7>

본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규정의 [별표1]평가분야의 항목과 배점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11. 9>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부칙 ①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1일 이후 전임교원의 연주활동은 개정된 규정에 의거하여 발생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13. 7. 24>

본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2. 27>

본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1. 8>

본 규정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4. 20>

본 규정 [별표1]평가분야의 항목과 배점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6. 8. 11>

최근 부칙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2016.4.20. 개정되었던 규정 [별표1] 평가분야의 항목과 배점 중 산학협력 관련 사항과 연구비수혜액 배점은 [별표1]의 수정된 내역으로 재개정하여 2016년 9월 1일부터 먼저 시행한다.

부 칙 <2018. 4. 20>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사항) [별표1] 평가항목 중 교육영역(융합교과목 개발, 대학생과외 특별활동), 연구영역(오픈소스SW 기여, SW프로그램 등록), 봉사영역(소프트웨어중심사업단 단장 및 부단장, 운영위원)에 대한점수 인정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속 교원에게만 적용한다.

[**별표 1**] 평가분야별 항목과 배점<개정 2006. 6. 1, 2009. 2. 3, 2010. 12. 7, 2011. 11. 9, 2013. 7. 24, 2015. 2. 27, 2016. 1. 8, 2016. 4. 20, 2016. 8. 11, 2018. 4. 20>

1. 교육 분야 기준

분류	단위		평 가 항 목	거 스	비고
七五	기간	항 목	세 부 내 용	점 수	미끄
		강의 시간	-	9 + (수업담당시수 - 책임시수)*1.5	-
		강의 평가	수강인원 5명 이하 과목 제외, 팀티칭 포함 (담당 비율 가중치 적용하여 산출)	강의평가 조정점수 평균값*5	-
		대규모강의	수강인원 80명이상 강좌	2점/건	4점상한
		학부강의/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책임시수를초과하는강좌, 3학점이상 강좌	2점/건	4점상한
		e-class강의	15주 기준 5회이상 녹음 동일과목인 경우 1강좌만 인정 강의공개시 추가 가산점	2점/건 (가산점 2점/강의공개시)	4점상한
강의	학기	교육매체, 교수법 개발등	 1:1 수업클리닉, 수업촬영 및 컨설팅 교육인증 관련 교과목 포트폴리오 TBL/PBL/온라인 및 블렌디드 러닝/영어강좌 등의 교과목 개발 융합 교과목 개발(단, 융합교과목은 2개이상의 전공이 다른 교수가 함께 교과목 개발, 운영시 인정)※부칙 참조 	5점/건	15점상한
		교수법특강/워크숍 참여	동일한 주제에 대한 특강, 워크숍등은 1회만 인정진행시간 50% 이상 참석해야 인정	3점/건	15점상한
		외국어강의	원서, 영문강의안, 매수업 영어(외국어) 100% 사용 :5 원서, 영문강의안, 매수업 일부 영어(외국어)사용 : 4 원서, 영문(외국어)강의안 : 3	3~5점	-
		취기 이 어 그 이	강의계획서, 성적기한내 미입력 및 미제출	-3/건	
		학사운영 지원	보강없는 결강	-2점	_
	•	교양강좌 운영교수제	교양강좌 책임운영 실적	강의평가조정평균점수	5점 상한
		대학생 과외 특별활동	학생 대상 과외활동	2~3점	3점 상한
학생		석사·박사 배출	석・박사 학생 논문지도 및 배출	*석사: 0.5/명 *박사: 1.0/명	4점 상한
지도 (대학원		학생 면담 지도	학생 면담	0.2/명	10점 상한
생 지도,기		논문 심사	대학원생 논문심사(지도교수 제외)	0.2/편	2점 상한
타 교육 활동)		캡스톤설계지도	학생들이 캡스톤설계를 통해 제작한 설계물을 교내외 경연대회에 출품하도록 지도한 실적 (증빙)캡스톤설계 작품 전시회 신청서	3점/건	15점상한
		현장교육 또는	현장 답사지도, 현장 학습 지도,	0.5점/건	2점상한

	실습지도	모의재판·학술강연회·모의국회·작품전시 ·각종 전시회 지도, 교육인증관련 워크숍 및 특강참여 활동 등(학기초 u-Campus에 강의계획서 내용에 현장학습과목으로 표기한 과목만 인정함)		
교육전 영역	기타	교수업적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활동	0.2점~0.5/건	5점상한

※ 교육분야 상한 점수는 100점이며, 교양강좌 운영교수제와 대학생 과외 특별활동은 인제니움학부대학 소속 교원에게만 적용됨(단, 대학생 과외 특별활동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속 교원도 적용함)※부칙참조<개정 2018. 4. 20> ※ 강의분류 평가항목은 상한점수를 학기단위로 적용하고, 학생지도와 교육전영역 분류 항목은 1년 단위로 상한 점수를 적용함<개정 2013. 7. 24, 2016. 8. 11>

2. 연구 분야 기준

분류	항	목	코드	인정조건	점수	인정비율	
		SSCI	10-1		400		
		, A&HCI		IF 상위 25%미만~ 50%이상(Q2)	350)	
	SCI급	, Adrici	10-3	IF 하위 50%미만(Q3,Q4)	300		
			10-4	IF 상위 25%이상(Q1)	350		
		SCI(E)	10-5	IF 상위 25%미만~ 50%이상(Q2)	300		
			10-6	IF 하위 50%미만(Q3,Q4)	250	• 주저자 : 1인	
논문	기타 국제		11-1	SCOPUS	(이공)1 25 (인문)1 75	80%, 3인 60%, 4인이 사	
			11-2	심사제도가 있는 비SCI급, 비scopus 학술지	100		
	(Proceeding		12	학술대회 Proceedings (발표자료와 Abstract 제출 시 인정,	50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국내학술회 (Proceeding	의 발표논문 (s)	13	Abstract만 제출시 인정불가)	20	하단참조	
	교내논문집		14	교외논문 투고비율, 편집위원 구성 등 한국연 구재단 등재지 평가 기준 적용	50		
	국내 일반학	 술지	15	심사제도가 있는 비 학진급 학술지	30		
	학진급		16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지	100		
	전문국제학	술서적	20	해외 출판 전문 학술서적 (1) 주, 참고문헌, 내용, 분량을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250점, 200점, 150점, 100점 차등 부여 (2) 개정판 : 개정 부분의 내용과 분량을 고려하여 비율 산정	250 ~ 100		
저서	전문국내학-	술서적	21	국내 출판 전문 학술서적 (1) 주, 참고문헌, 내용, 분량을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50점, 100점 차등 부여 (2) 개정판 : 개정 부분의 내용과 분량을 고려하여 비율 산정	150 ~ 100	1인~3인 : 100%/저자수 4인이상 : 25%	
	교양학술서 <신설 201	3. 7. 24>	22	해당 단과대학의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서적으로 주, 참고문헌, 내용, 분량 등을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50점, 30점 차등 부여	50 ~ 30		
		-학작품 국역	23	전공 영역이 일치하는 번역서로 주,	100		
	전공서적 국	1역	24	참고문헌, 내용, 분량을 소속기관	~		

	전공서적 외국어역	26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00점, 70점, 50점 차등 부여	50	
	편저/학술논문단행본	28	전공 영역이 일치하는 편저, 교재용으로 제작한 도서로 주, 참고문헌, 내용, 분량을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70점, 50점 차등 부여	70 ~ 50	
	연구보고서 또는 연구실 적물	40	-	20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평 또는 서평	41	-	10	
	기타 교수업적평가위원 회에서 인정하는 연구활 동	42	대학생, 직원, 교수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공학인증 관련 자체 평가보고서 제출 등	25점/건 최대 100점	
	문학창작물 단행본	43	문학전공자에 한하여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 위원회에서 작품성, 분량을 고려하여 A급 100점, B급 70점, C급 50점 부여	100	
	문학작품 : 시	44	등단 문인이 전문 문예지에 게재한 경우	10/편	• 책임:1인
기타연	평론	45	등단 문인 혹은 평론가가 전문 문예지에 게 재한 경우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 로 판단하여 차등부여 A급 50점, B급 30점, C급 10점	10~50 점/편	60%, 4인이상 50%
구활동		46-1	기존Github 1,000 star 이상 프로젝트에 병합 된 코드패치 한건당※	50/건 (100상한)	
		46-2	본인 개설 프로젝트가 Github 400 star 이상 획득(1회만 인정)※(250점상한)		70%, 3인 50%, 4인이상
	오픈소스SW 기여	46-3	본인 개설 프로젝트가 Github 1000 star 이상 획득(1회만 인정)※	250/건 (250상한)	30%
	※부칙 참조		※Github 이외의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단대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이에 상응한다고 인정했을 때 ※기 점수획득 프로젝트의 등급이 Github 400 star에서 Github 1000 star로 상승한 경 우 추가 점수만 인정		
	SW프로그램 등록 ※부칙 참조	47	인증기관의 심의과정을 거친 SW프로그램에 한함(※본교 산학협력단에 신고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지적재산권)	50	
학술	국제 학술단체상	50	10개국 이상으로 구성된 세계적인 단체에서 수여	150	100% / 저자수
수상	국내 학술단체상	51	국내 공인 학술단체에서 수여	70	100/0 / /۱/۱ [

* 기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연구활동(42) 항목의 대학생, 직원, 교수 대상 교육 프로그램개발은 인제니움학부대학 소속 교원에게만 적용 됨<신규 2016. 8. 11>

- ※ 저서 용어 정의 <신규 2013. 7. 24>
 - 전문학술서적 : 전공분야의 이론·학설을 정립하여 저술한 학술적 가치가 높은 학술저서를 말하며, 논문모음집, 교재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교양학술서적 : 교양분야의 학술서적으로써 학술적 가치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는 서적
 - 역서 :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전공분야의 학술서 또는 문학작품집을 국어나 외국어로 변역· 출판한 서적
 - 편저 : 여러 사람의 논문이나 문예창작물 등을 편집하여 출판한 서적
- ※ SCOPUS 논문 관련

-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에서 SCOPUS의 4가지 Document Type은 국제전문학술지로 불인정 (예: Conference Paper, Article-in Press, Conference Review, Short-survey)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에서 제외
- 논문지에 실린 '특별기고'같이 ISSN이 없는 것은 논문으로 불인정

※ 저자 수 3인 초과 논문 인정비율

기준	주저자 표기가 있는 경우(저자 3인 초과)	주저자 표기가 없는 경우 (저자 3인 초과)
주저자	$1.2 \times \min\left(\frac{1}{m+0.5}, 0.5\right)$	
. , ,	단, $n=0$ 이면, $\frac{1.2}{m}$	$\frac{1.2}{m+n}$
공저자	$\left\{1 - m \times \min\left(\frac{1}{m + 0.5}, 0.5\right)\right\} \times \frac{1.2}{n}$	(단, 15% 이상으로 함)
	(단, 15% 이상으로 함)	

T : 총저자 수

m: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수,(단, 주저자에서 본교 대학원 학생은 제외)

n: 공저자 수(T-m, 주저자를 제외한 기타저자 수)

분류	항 목	코드	인정조건	점수	인정비율
	국제개인전시회	70	 (1) 작품 수 10점 이상(새로운 창작 작품수*가 5점 이상 포함)인 전시회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해당 국가의 전시 규모와 시설 중 A급(최고급) 150점, B급(보통) 100점, C급70점 부여 	150 ~ 70	
	국내개인전시회	71	 (1) 작품 수 10점 이상(새로운 창작 작품수*가 5점 이상 포함)인 전시회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전시 규모와 시설 중 A급(최고급) 100 점, B급(보통) 70점, C급 50점 부여 	100 ~ 50	• 책임: 1인 100%,
디자인, 건축설 계 등	국제단체전시회	72	 (1) 새로운 작품 수* 1점 이상 출품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국가의 전시 규모와 시설 중 A급 (최고급) 100점, B급(보통) 70점, C급 50점 부여 	100 ~ 50	2인 80%, 3인 60%, 4인이상 50% • 공동: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국내단체전시회	73	 (1) 새로운 작품 수* 1점 이상 출품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전시 규모와 시설 중 A급(최고급) ~B 급(보통) 50점, C급 30점 부여 	50 ~ 30	
	국제공모전	74	(1) 해외 공모전 또는 국내에서 개최한 국제 공모전 수상(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A급(최고급) 250점, B급(보통)	250 ~ 150	

		200점, C급 150점 부여		
국내공모전	75	(1) 국내 공모전 수상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A급(최고급) 150점, B급(보통) 100점, C급 70점 부여	150 ~ 70	
국제 일반설계	76	 (1) 해당국가 설계계약 인증서 또는 준공 허가서 제출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A급(최고급) 120점, B급(보통) 90점, C급 60점 부여 	120 ~ 60	
국내 일반설계	77	 (1) 설계계약 인증서 또는 준공 허가서 제출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A급(최고급) 100점, B급(보통) 70점, C급 50점 부여 	100 ~ 50	
국제 전문지 게재	78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에서 심사절차가 있는 국제 전문잡지에 게재된 작품의 작품성, 분량, 잡지의 수준을 고려하여 A급 150점, B급 100점, C급 70점 부여)	150 ~ 70	
국내 전문지 게재	79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에서 심사절차가 있는 국내 전문잡지에 게재된 작품의 작품성, 분량, 잡지의 수준을 고려하여 A급 100점, B급 70점, C급 50점 부여	100 ~ 50	

※주저자: 제 1저자, 교신저자임(교신저자 별도 표시가 없으며, 제 1저자가 학생인 경우는 그 학생의 지도교수 또는 교신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 작품수 : 건축설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 ※ 공연 및 창작□지휘 등 실적은 해당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전임교원의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신설 2013. 7. 24>
- ※ 최초공연일로부터 3년 이내 재연주의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
- ** 개인발표에 대한 공연장규모 : 공인된 100석 이상의 전문 연주홀 <개정 2013. 7. 24>
- ※ 개인발표(코드번호 80), 협연(코드번호 82), 창작(코드번호 87), 지휘(코드번호 90) 실적은 공인된 전문 <개정 2013. 7. 24>
 - 연주홀의 객석 규모, 연주 또는 지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세부 등급을 결정. 단, 기준시간이 정해진 실적유형 중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점수의 70%까지 배점 가능
- ※ 연주 등과 함께 지휘활동을 하는 경우, 별도 지휘실적으로 인정 불가 <개정 2013. 7. 24>
- ※ 음반의 경우 공연실황을 담은 영상물을 수록한 것으로 타 연구업적과 중복되지 않은 것만 인정

※ 연구비 수혜액에 따른 배점 <개정 2016. 8. 11>

구분		이공계 (코드 : 101)		인문계(생활체육학과, 수학과는 인문계열 배점 적용) (코드 : 102)			
	수혜액	배점	수혜액	배점			
	1억원 이하	30점/천만원	3천만원 이하	40점/천만원			
연구비 수혜액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00점+15점/천만원 (1억원 초과금액 기준)	3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20점+30점/천만원 (3천만원 초과금액 기준)			
	3억원 초과	600점+10점/천만원	1억5천만원 초과	480점+20점/천만원			

		(3억원 초과금액 기준)		(1억5천만원 초과금액 기준)
	천만원 이하	20점/백만원	300만원 이하	30점 /백만원
가산점	천만원 초과 ~	200점+10점/백만원	300만원 초과~	90점+20점/백만원
:순수	3천만원 이하	(천만원 초과금액 기준)	천오백만원 이하	(삼백만원 초과금액)
기여금	3천만원 초과	400점+5점/백만원 (3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기준)	천오백만원 초과	330점+10점/백만원 (천오백만원 초과금액)

분류	항목	코드	인정조건	기준시간	점수
	개인발표	80	(1) 독창회/독주회/작곡발표회(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에서 심사하여A급 150점, B급 100점, C급 70점 부여	60분 이상	150 ~ 70
	공동발표	81	(1) 듀오 연주(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에서 심사하여A급 100점, B급 70점, C급 50점 부여		100 ~ 50
		82	(1) 독주악기의 전악장 협연(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에서 심사하여A급 100점, B급 70점, C급 50점 부여		100 ~ 50
	협연	83	독주악기의 그랜드피스 또는 단악장		40
		84	Two Pianos 및 2중주, 3중주 또는 중창 전악장 협연		50
공연 및 창작□	실내악/ 기악 앙상블	85	3-10중주(성악(독창,중창,오페라갈라콘서트),국악준함)	전체프로 그램	70
장작니 지휘 등	반주	86	기악・성악・국악 반주	전체프로 그램	50
0		87	(1) 오페라, 교향악곡, 관현악곡, 오라토리오, 미사, 칸타타, 무용음악, 창극 작곡발표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에서 심사하여	30분 이상	150 ~ 70
	창작	88	A급 150점, B급 100점, C급 70점 부여 실내악곡, 합창곡, 기악독주곡, 연가곡, 전자음악	10분 이상	70
		89	가곡, 보컬곡	5분 이상	50
	지휘	90	(1) 교향악단(관현악단)/오페라/집박 (2)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에서 심사하여 A급 150점, B급 100점, C급 70점 부여	전체프로 그램	150 ~ 70
		91	실내악단/전문합창단/집박	전체프로 그램	70
	기타	92	기타 음악분야 실적		20

- 연구비 수혜액 인정 :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 규정 및 연구 간접경비 징수 및 관리 시행세칙에 근 거한 외부 연구비 수혜액 <신설 2013. 7. 24>
- 가. 연구비 수혜액에 따른 배점은 해당 연구과제 수행월수에 비례하여 해당 년도별로 반영 <개정 2013. 7. 24>
- 나.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의 연구비가 구분되는 경우
 -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 연구비 총액 공동연구자 해당연구비 총액
 - 공동연구자의 연구비 : 해당연구자의 연구비
- 다.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의 연구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 : 해당연구자 연구자 일정부분을 책임자에게 우선 배정 후 나머지를 1/n으로 배분
- ※ 순수기여금 = 학교 간접비 징수금액 인센티브 대응자금
- ※ 산업체 연구비 수혜액에는 민간산업체에서 수주한 연구비 및 산업체와 함께 수주한 정부의 연구비 도 인정함.

3. 봉사 분야 기준

구분	평가항목	단위 점수	점수 상한	비고
	가 , , , , , , , , ,	5	10	
	입시관련업무 출제, 위촉사정관, 논술채점	10	20	
	(교수회의 참석 등 대학 봉사 (학장/대학원장/기관장이 평가, 교수회의 등 공식행사 참석 여부를 반영) 우수 16~20 양호 10~15 보통 5~9 미흡 5점 미만	0~20	20	
	학과회의 참석, 학생 지도 등 학과 봉사 (학과장이 평가, 학과 공식 행사 참석 여부를 반영) 우수 16~20 양호 10~15 보통 5~9 미흡 5점 미만	0~20	20	
교내봉사	행정부서 등 대학정책과제 참여, TFT 위원	5	20	모든 봉사활동에 대
,, ,	학교 공식 홍보활동 참여	5	20	해서는 기간이 명시 된 증빙서류를 제시
	장학금, 발전기금 등 모금활동	10점/	100만원	할 수 있어야 하며,
	교내특강(CDP, 교수학습센터 등), 교내수상	3	10	공동 수상 및 수훈은
	처장	40	40	공동 연구원 인정 환
	처장을 제외한 교무위원·교수평의회 의장	30	30	산율 적용
	학교 부속, 부설기관의 장, 학과장(주임교수), 교학부장, SW중심사업단 단장 (※부칙 참조)	20	20	임기제 인정비율
	인증 PD, 각종위원회의 장, 인제니움학부대학 주관교수, SW중심사업단 부단장(※부칙 참조)	15	15	● <기본> 두학기 : 100%, 한학기 :
	위원회 위원, 교수평의회/연구소/SW중심사업단(※부칙 참조) 운영위원, 교평의장단	10	20	50% • <응용>
	교내 언론지 기고 등	5	10	~~~ 1%학기이상 :
	외국인 교수법 프로그램 참여	10	30	100%, 1학기초과
	기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5	20	: 75%,
	※학회의 장, 저명저널 회장 부회장	25	25	%학기이상 : 50%, %학기미만
	편집앙 편집위원장	20	20	: 25%
	※학회임원, 저명저널 편집위원	15	15	
	- 1 4 3 N 10 N N - 국제	15	15	
	학술회의 조직위원장 국내	10	10	
	국제학회 또는 전국규모 ※학회 논문심사, 학술대회 주관위원급 이상	10	20	
교외봉사	국제학회 또는 전국규모 학술대회의 사회, 토론, 논문 발표(초청)	10	20	
	각종 평가단 단장 및 평가위원, 단일성 심사/평가	5	15	
	주요 사회단체, 공공기관, 연구소의 위원급 이상	15	15	
	국가고시 또는 국가 채용고시 출제	5	10	
	강연, 특강	5	15	
	기고, 방송 출연	5	10	

	국제저명 단체	20	20	
수상 및 수훈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10	10	
	기타 기관 및 단체	5	5	

※ 학회 인정조건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발간 학회

※ 봉사분야 상한 점수는 100점

모든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기간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공동 수상 및 수훈 은 공동 연구원 인정 환산율 적용

임기제 인정비율

• <기본> 두학기 : 100%, 한학기 : 50%

• <응용> 1%학기이상: 100%, 1학기초과: 75%, %학기이상: 50%, %학기미만: 25%

4. 산학협력 분야 기준

분류		평 가 항 목	점 수	비고
正川	항 목	세 부 내 용	省 丁	비포
산학협력 교육	산학협력 장단기 현장실습 기업체 협약	학점 인정되는 장기(15주 이상) 또는 단기 (15주 미만) 산학협력 현장실습에 한하여 인정함	장기: 5/건 단기: 3/건	
	산학협력 장단기 현장실습 학생 지 도	학점 인정되는 장기(15주 이상) 또는 단기 (15주 미만) 산학협력 현장실습에 한하여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지도활동을 수행한 경우 인정함	장기: 3/명 단기: 2/명	
	취업 성사 <개정 2013.7.24>	 취업성사 교수는 취업인원별 5점 해당학과(부)장은 학과(부) 성사인원별 1점 	1) 취업성사 1명당 5점 2) 해당학과(부)장 취 업성사 인원*1점	
	일학습병행제 학생지도		5/명	
	산학연계 전공 또는 NCS 프로그램 개발	(증빙) 관련공문/결과보고서 제출 단, 다수 참여로 개발 시 학과(부)장 재량으로 분배	50/건	
	산학협력 재직자 위탁교육프로그램 개발	1) 기업에서 대학에 위탁한 재직자 대상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단 다수참여로 개 발 시 학과(부)장 재량으로 분배 2) 교육 수강인원	1) 50/건 2) 1/명	
	산학협력 캡스톤 설계 지도	캡스톤설계 주제를 산학협력 기업과 공동으로 설정하여 운영한 산학협력 캡스톤설계 지도	1/명	
	창업 지도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지도하여 학교 창업 관련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 창업 동아리 지도 창업 관련 교육 	1) 10/건 2) 3/건 3) 3/건	
산학협력 연구	국제특허 <개정 2013, 7, 24>	(1) 등록된 특허에 한하여 인정 <개정 2013 7. 24> (2) 대학 소유권이 없는 특허는 현 기준점수의 30%를 배점. 대학 소유권이 있는 특허 중 지분율 100%는 기준점수의 100%를 배점, 50%이상은 80%를 배점, 50%미만은 50%를 배점 (3) 최초 등록된 특허에 한하여 100% 점수 부여하고 이후 동일 내용의 추가 특허 등록에 대해 10% 가산점 부여		• 책임: 1일 100%, 2일 80%, 3일 60%, 4일 이상 50%
	국내특허 <개정 2013. 7. 24>		100	4인이상 50% • 공동 :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3 = 3 = 3			
	전공 관련 국제표준기고문 (제출/채택)	_	10/90	
	전공 관련 국내표준기고문 (제출/채택)	-	5/45	
	실용신안	본교 산학협력단에 소유권이 이전된 지적재산	30	
	기술프로그램 개발	권	30	
-	기술이전	기술이전료	15/100만원	
	신기술, 신제품 인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한 신기술 (NET) 및 신제품 (NEP) 인증 실적<개정 2013. 7. 24>	100/건	
	산업체 연구비수혜액	민간 산업체로부터 수주한 연구비	연구비 수혜액 배점×1.2	
	산학협력 기금유치	외부 산학협력 기금(현물 또는 현금) 유치	10/100만원	현물 100점상한
	교원 창업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교내 창업한 경우 공동 창업인 경우 3인이내 70%, 3인이상 50%(학생 은 창업인원에서 제외)	400/건	
	입주기업 유치	창업보육센터에 외부 입주기업 유치실적	국내 200/건 국제 500/건	
	기업부설 연구소 유치	1) 기업의 투자(현물 또는 현금) 필수 2) (증빙) 기업과의 MOU 서류 제출 3) 산학협력기금과 중복 불인정 * 기여도에 따라 배분 가능	국내 200/건 국제 500/건 가산 10/100만원	현물 300점상한
		계약학과 유치	500/건	
	계약학과 유치	1) 기업 지원(현금 또는 현물) 필수 * 기여도에 따라 배분 가능	가산 10/100만원	현물은 100점상한
		2) 정부지원금은 연구비 수혜액 기준	연구비수혜액 기준	연구점수 반영
	산학협력 정부재정지 원사업 수주	기여도에 따라 배분 가능	1/100만원	350점상한 /1인
	공동장비활용 수주액	외부에서 교내 공동장비 사용료 수주	10/100만원	
	산학협력 국가 지 정 연구소/센터 유 치	기여도에 따라 배분 가능	500/건	
	자율지표	기타 산학협력관련 활동으로 인정되는 실적 (교수업적평가위원회가 평가) ※산학협력중점교원 해당사항	1~50/건	200점상한
	※산업체 기술/ 경영지도/법률자문	-	일회1 지속5	20점상한
산학협력 봉사	산학협력 세미나/포 럼/워크숍 유치	-	국내 5/건 국제 10/건	20점 상한
	산학협력 가족회사	유치	5/건	
	산학협력 정부재정 지원사업 제안서 작성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학협력관련 사업 제안서 작성 참여 실적 ※ 산학협력중점교원만 해당 함	0.2/100만원 책임자 10/건	50점 상한
	학과(부) 산학협력 전담교수	산학협력전담교수 중 학과(부)의 산학협력 전 담 책임 지정 교수	30/학기	60점 상한

- ※ 취업성사 실적은 취업과정과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와 해당 학생 및 기업 담당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취업알선 확인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인정됨
- ※ 산업체 기술/경영지도/법률자문 : 세미나 등 일회성의 경우 1점, 협약에 의해 지속적으로 (20 시간 이상) 수행한 경우 중빙서류 제출하면 5점 인정, 기술자문 협약 실적이 있는 경우 수주 금액 에 따라 연구점수로 인정됨
- * 산학협력 가족회사 유치 : 산학협력의 주요 대상이 되는 기업체를 가족회사로 유치하여 협약한 실적, (증빙)가족회사 가입신청서